

업무연락

2020.3.4.(수)

수신 : 각 시·도(축산담당 부서장), 축산단체(협회)

제목 : '코로나 19' 관련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요령 알림

1. 최근 축산농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단위에서 스스로 농장 상황에 맞게 비상대응 준비 필요성이 증가 되었습니다.
2. 특히 축산농가가 자가 격리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농장관리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감안, 우리부는 농협(축산경제)과 협력하여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요령(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일선 축협에 시달(3.3일자) 하였습니다.
4.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협회에서는 농가에 전파, 지역단위 '코로나 19' 방역 대응에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 19' 관련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요령 1부. 끝.

013m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코로나19」 관련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요령

※ 축산농가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거주지, 농장 위치, 지역별 방역상황에 맞게 적용

1 1단계 (평상시 → 외부활동 자체, 비상연락처 및 협조인력 확보)

- (위생관리) 농장관계자 대상 위생관리, 대인 소독, 용품확보 등
 - * '코로나19' 예방수칙 숙지 이행, 농장근무 관계자 교육 실시
- (외부활동)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자체(외부 회의, 행사 등)
 - * 외부 업무 필요시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비접촉 수단을 최대한 활용
- (비상연락처 등) 비상연락처* 및 상황 발생시 협조 인력 파악
 - * 비상연락처 : 보건소, 축협, 사료공급처, 약품거래처, 분뇨처리, 출하관계자 등
 - * 협조대상 : 1순위) 가족 · 농장근무자 → 2순위) 인근농장 지인 → 3순위) 조합

2 2단계 (격리상황 발생시 → 상황전파, 협조인력 동원, 입원상황 대비)

- (즉시) 관할 보건소·지역번호+120·1339 콜센터 문의
- (상황전파) 축협, 사료·약품·분뇨처리·출하 등 공급처
- (농장출입 차단·소독) 협조인력 활용(격리자와 공동작업 불가)
 - (출입차단) 농장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식 부착
 - (농장소독) 농장시설(천정 → 벽 → 바닥 및 통로) 소독
 - * 농장에 비치된 소독제 활용 분무 소독
- (자가격리) 상황악화 대비 협조요청 목록 작성, 사전 협조요청 등
 - (협조 목록 작성) 사료 등 재고량을 파악하고 협조요청 목록 작성
 - (협조대상 사전요청) 입원 등 비상상황 대비 협조 인력에게 사전 요청

3단계 (확진 등 병원입원시 → 상황전파, 비상체계 가동)

- ◇ 축협을 통한 지원은 농장주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함(관련 비용은 농가부담)
- ◇ 가축질병 차단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농장인근 조합원, 농장직원 활용

□ (상황전파) 농장주 → 지역축협 → 관계자(사료·약품·출하·분뇨처리 등)

□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등 활용

* 농장 및 농장주변 소독(단 가축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실시)

□ (지원기간) 농장주 치료기간(최소 2주간)

○ (대체인력) 가급적 가족, 농장근무자, 농장인근 조합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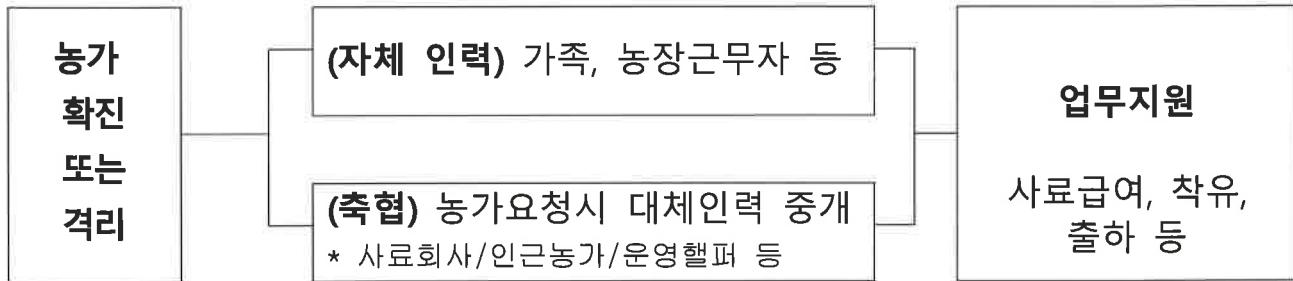
* ① 가족 · 농장근무자 → ② 농장인근 지인 → ③ 조합(대체인력 중계) 순

○ (업무범위) 기본 사료공급 등 최소한의 필수 관리에 한정

* 전문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될 업무의 경우는 농장주 복귀 후 처리

○ (비용부담)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사고축 발생 포함)시 농장주 부담

* 농장출입 및 관리는 농장주와 사전협의 후 조치



※ 참고 : 질병관리본부(신종감염병대응과) 입장(3.3)

□ 농장종사자 자가격리 시 생활수칙(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등)은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준수 될 필요

⇒ 격리자의 농장내 공동작업은 불가, 대체인력을 투입 시 i)소독 후, ii)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는 것을 전제로 농장상황에 따라 조치